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299호

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정정고시

건설부 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되어 서울시 고시 제2004-418호(2004.12.27.)로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초아파트지구(1지구)내 서초한양아파트에 대하여 2003.06.27 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, 서초구 고시 제2006-55(2006.06.26.)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수행한 서초한양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서초구 고시 제2018-208(2018.09.06.)호로 공사완료 고시 되었으나, 서초구 고시 제2014-157(2014.12.31.)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의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고시 제 2018-290 (2018.12.13)호로 고시하였으나, 구역면적 오기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.

2018. 12. 20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-5번지 일대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8,594.9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안기성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9, 6층 (반포동, 대영빌딩)
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8.12.05.

5. 관리처분계획 변경내역

가. 대지 확정측량 결과(변경)

구 분	관리처분변경 (2018.01.18)			금회 관리처분변경			증감	비고
사업부지면적(㎡)	38,594.40			38,594.90			증)0.50	확정측량 결과에 따름
대지면적(㎡)	38,583.16	주택	37,599.16	38,583.7	주택	37,599.70	증)0.54	
		상가 (존치)	(984.00)		상가 (존치)	(984.00)		
도로면적(㎡)	11.24			11.20			감)0.04	

나.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
- 지하2/지상34층, 아파트 11개동(829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
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없음)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(전용면적)			
	계	60㎡ 이하	60㎡ 초과 ~ 85㎡ 이하	85㎡ 초과
계	829	144	237	448
토지등소유자	456	-	24	432
일반분양	257	28	213	16
임대	116	116	-	-

라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(변경)

1) 신 설 : 도로 11.20㎡

2) 폐 지 : 해당없음

마. 기존건축물의 철거 시기 : 철거완료
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5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없음)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(전용면적)			
	계	60㎡ 이하	60㎡ 초과 ~ 85㎡ 이하	85㎡ 초과
계	829	144	237	448
토지등소유자	456	-	24	432
일반분양	257	28	213	16
임대	116	116	-	-

라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(변경)

1) 신 설 : 도로 11.20㎡

2) 폐 지 : 해당없음

마. 기존건축물의 철거 시기 : 철거완료
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5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